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54
----------	-------

제출년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현옥순, 한명훈, 설호영,
김재국,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황은화, 최찬규,
한갑수, 이진분, 박은정,
박은경, 이지화 의원(14인)

1. 제안이유

-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염, 한파, 폭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기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특히 건설·제조·농업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함.

2. 주요내용

-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명피해는 총 147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2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의 다수는 건설노동자였음. 또한 최근 구미·포항·인천·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폭염과 재난 환경 속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

- 현행 법체계에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으로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직전이나 발생 중인 '급박한 위험'에 한정하여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안산시의회는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제조업·농업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7일 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았던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오후 1시에 퇴근한 한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오후 4시까지 일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7월 24일 정오께는 34도의 폭염 속에 경북 포항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4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7월 6일 인천에서 2명, 7월 28일 서울에서 1명은 더운 날 맨홀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명피해는 147명입니다. 이 중 건설업에서 70명이 발생했으며, 온열질환 사망자 22명 중 15명이 건설노동자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기후위기 재난이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

라 노동자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국민 보호와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으로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만 작업중지권이 보장되고 있어,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작업중단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7월 17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사업주의 의무만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역시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기후재난으로 인한 노동자의 무고한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 범위를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재난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라!

2025. 9.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